

2023년도 제1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2023. 9. 19.



신안산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신안산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3. 9. 19.(화) 11:00
2. 장소 : 신안산대학교 본관 2층 세미나실 I
3. 구분 : 정례 비정례

구분	인원	성명
참석인원	7명	오혁수, 김세환, 김동련, 최승호, 김기동, 고찬영, 안현준
불참인원	6명	이귀영, 이상수, 한송이, 강부근, 김경준, 김은혜

4. 회의 안건 및 결과

회의안건	심의결과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사항	수정의결 ¹⁾
2.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	원안의결

- 1) · 제4조의3제3항 ‘해당 규정에 정한다.’ →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로 변경
 · 제49조제2항 ‘학부모’ → ‘본인 또는 학부모’ 로 변경

5. 개회 선언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어 오혁수 의장이 대학평의위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다.

6. 회의 내용

▣ 제1호 안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김기동 의원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함.

1. 학칙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4조의3 (학과 설치·통합 및 폐지)	<신설>	<p>제4조의3(학과 설치·통합 및 폐지) ① 본 대학의 설립이념 구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u>학과전공의 설치, 통합 및 폐지할 수 있다.</u></p> <p>② <u>학과 폐지로 인하여 재학생이 다른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그 전입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u></p>	학과 설치·통합 및 폐지에 관한 학칙 내용 추가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③ <u>학과·전공의 설치,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규정에 정한다.</u>	
제8조(학기)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을 <u>변경하여</u> 전에 개강할 수 있고, 이 경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한다.	학기 개시 기준변경
제15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10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7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수 조정
제15조2 (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주요사항을 관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0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① 입학전형의 주요사항을 관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7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수 조정
제25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u>10%~18%이상</u> , 전문 교과 <u>82%~90% 이상으로</u> 하고 전문교과 시수의 50%는 실험실습을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u>2년제 최대 6학점, 3년제 최대 10학점으로 하며</u> , 전문교과 <u>2년제 최대 64학점, 3년제 최대92학점으로</u> 하고, 전문교과 시수의 50%는 실험실습을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점 배점기준 및 실험실습 시수를 현행에 맞춰 수정
제34조 (졸업 및 수료)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u>38학점 이상</u> 2. 2학년 수료: <u>76학점 이상</u> 3. 3학년 수료: <u>114학점 이상</u>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u>36학점 이상</u> 2. 2학년 수료: <u>75학점 이상</u> 3. 3학년 수료: <u>112학점 이상</u>	수료 학점 수정
제56조의2 (교직원의 임무)	③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또는 강의를 전담하게 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③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u>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며</u> , 필요한 경우 <u><삭제></u> 강의를 전담하게 하거나	내용 수정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부칙 제 2조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p>학과가 폐지된 경우 종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6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부터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전과를 할 수 있다.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p> <table border="1" data-bbox="804 694 1276 922"> <thead> <tr> <th data-bbox="804 694 1276 725">모집단위 폐지학과(전공)</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04 725 1276 757">실용무용과</td> </tr> <tr> <td data-bbox="804 757 1276 788">기계공학전공</td> </tr> <tr> <td data-bbox="804 788 1276 819">실내디자인과</td> </tr> <tr> <td data-bbox="804 819 1276 851">연예매니지먼트과</td> </tr> <tr> <td data-bbox="804 851 1276 882">시각디자인과</td> </tr> <tr> <td data-bbox="804 882 1276 913">자동화시스템전공</td> </tr> </tbody> </table>	모집단위 폐지학과(전공)	실용무용과	기계공학전공	실내디자인과	연예매니지먼트과	시각디자인과	자동화시스템전공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추가
모집단위 폐지학과(전공)										
실용무용과										
기계공학전공										
실내디자인과										
연예매니지먼트과										
시각디자인과										
자동화시스템전공										
제58조의 3 (도서관의 운영)	<신설>	<p>① 본 대학에 설치한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한다.</p> <p>② 「대학도서관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예산에 관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도서관 운영사항 제정							
제64조 (학생지원)		① 심리상담, 보건의료,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u>학생처부속기관으로 학생지원 통합센터</u> 를 운영하며 별도의 규정을 둔다.	폐지조직인 학생지원통합센터 직제기구 삭제							

2. 학칙시행세칙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본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신속 정확한 학사 사무를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칙시행세칙은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신속 정확한 학사사무를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삭제
제2조 (재학연한)	학칙 제6조의 재학연한에 휴학기간은 <u>삽입</u> 하지 아니한다.	학칙 제6조의 재학연한에 휴학기간은 <u>삽입</u> 하지 아니한다.	내용 수정
제7조의2 (학점인정)	<p>⑦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강좌 중 본 대학이 정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기당 1학점, 재학중 2년제 2학점, 3년제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⑧ 창업학점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및 기관의 창업강좌를 수강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⑨ 학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⑩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⑧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강좌 중 본 대학이 정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기당 1학점, 재학중 2년제 2학점, 3년제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⑨ 창업학점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및 기관의 창업강좌를 수강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⑩ 학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⑪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p>	〃
제8조 (휴학구분)	4.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단, 매 학기 개시 후 4분의 3학기 이내의 기간에만 허가한다.	4.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교학처</u> 에 제출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단, 매 학기 개시 후 4분의 3학기 이내의 기간에만 허가한다.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17조의2 (등록금의 반환)	③ ②항의 반환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심사를 통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 반환한다.	③ <u>제2</u> 항의 반환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심사를 통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 반환한다.	내용수정
제18조의1 (수강신청 제한)	제18조의1(수강신청 제한)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의2(수강신청 제한)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7조(강사)	강사의 초빙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른다.	①강사의 초빙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른다.	〃
제31조(보장)	<u>제30조의1, 2항</u> 에 의한 휴·결강은 담당 교수의 신청에 의해 학과장의 책임아래 반드시 보장을 실시한다.	<u>제30조에</u> 의한 휴·결강은 담당교수의 신청에 의해 학과장의 책임아래 반드시 보장을 실시한다.	〃
제32조 (현장실습)	③ 현장실습의 평가는 산업체에서 평가한 현장실습평가서 해당학과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평가로 한다. 단, 평가	③ 현장실습의 평가는 산업체에서 평가한 현장실습평가서 해당학과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평가로 한다. 단, 평가	〃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를 점수로 할 수 없을 경우엔 P로 한다.	를 점수로 할 수 없을 경우엔 P로 한다.	
제33조(출석)	8. 법정 <u>전염병</u> 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을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8. 법정 <u>감염병</u> 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을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
제44조 (성적제출)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여 직접 성적을 입력하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일람표는 학기말시험 최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여 직접 성적을 입력하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일람표는 학기말시험 최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u>교학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47조 (성적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 <u>한다</u>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 <u>할 수 있다</u> .	내용 수정
제49조 (학사경고)	① 매학기 평점평균 1.30미만인 자는 경고한다. ② 학사경고자는 <u>학부형</u>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특별지도를 하여 그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매학기 평점평균 1.30미만인 자(이하 " <u>학사경고자</u> "라 한다)는 경고한다. ② 학사경고자는 <u>학부모</u>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특별지도를 하여 그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조(유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조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조치할 수 있다.	〃
제52조 (후기졸업)	① 당해 학년도 졸업사정회에서 탈락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당해 학년도 졸업사정회에서 탈락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u>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u> .	〃
제53조 (발급사무)	증명서 발급사무는 졸업(예정), 재학, 수료, 제적, 성적 등의 학적에 관한 증명서와 학생증, <u>통학증</u> , 학생 신상 문제에 따른 증명서는 교학처에서 발급한다. <중략> 3. 수료증명서 : 당해 총 취득학점이 1학년 <u>38</u> 학점 이상인자, 2학년 <u>76</u> 학점 이상인자, 3학년 <u>114</u> 학점 이상인자 <중략> 제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96학점 이상인 자로서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증명서 발급사무는 졸업(예정), 재학, 수료, 제적, 성적 등의 학적에 관한 증명서와 학생증, 학생 신상 문제에 따른 증명서는 교학처에서 발급한다. <중략> 3. 수료증명서 : 당해 총 취득학점이 1학년 <u>36</u> 학점 이상인자, 2학년 <u>75</u> 학점 이상인자, 3학년 <u>112</u> 학점 이상인자 <중략> <u>라</u> . 제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96학점 이상인 자로서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내용 수정 및 수료 학점 수정
제57조 (학적부 정정)	3. <u>본적지</u> 변경	3. <u>주소지</u> 변경	내용 수정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33조의2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p><u>제 33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u></p> <p>① 총장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 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p> <p>② 총장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p>	고등교육법시행령 11조의2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 **고찬영 의원**이 이번 학칙 개정(안)에 보면 학기 개시일을 변경하여 개강할 수 있도록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1학기에 개강을 2주 연기한 것은 학칙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지 질의함.
- **김기동 의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었으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김동련 의원**이 제4조의3제3항에서 ‘세부사항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규정을 말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음. 때문에 제15조제2항과 같이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로 변경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임.
- **오혁수 의장**이 김동련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해당 학칙을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로 변경하는 것에 평의원의 동의를 구하고, 평의원이 전원 동의하여 제4조의3제3항의 ‘해당에 규정에 정한다.’ 를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함.
- **고찬영 의원**이 제56조의2제3항에서 교원이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몇 교원들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칙 개정 전에 전문위원의 위촉되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 **오혁수 의장**이 이전에도 교원들이 학과장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전문위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고찬영 의원**이 우리 대학에서 현재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가 있기 때문에 학칙시행세칙 제49조제2항에서 ‘학부모’ 라는 단어보다는 ‘보호자’ 라는 단어로 변경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함.
- **김기동 의원**이 성인학습자의 입장에서라면 ‘보호자’ 라는 단어도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성인학습자와 같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학부모’ 가 적합 때문에 개정(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옳아 보임.
- **김동련 의원**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인 또는 학부모’ 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학부모’ 에게 통지하나 담당자의 판단하에 ‘본인’ 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것

으로 개정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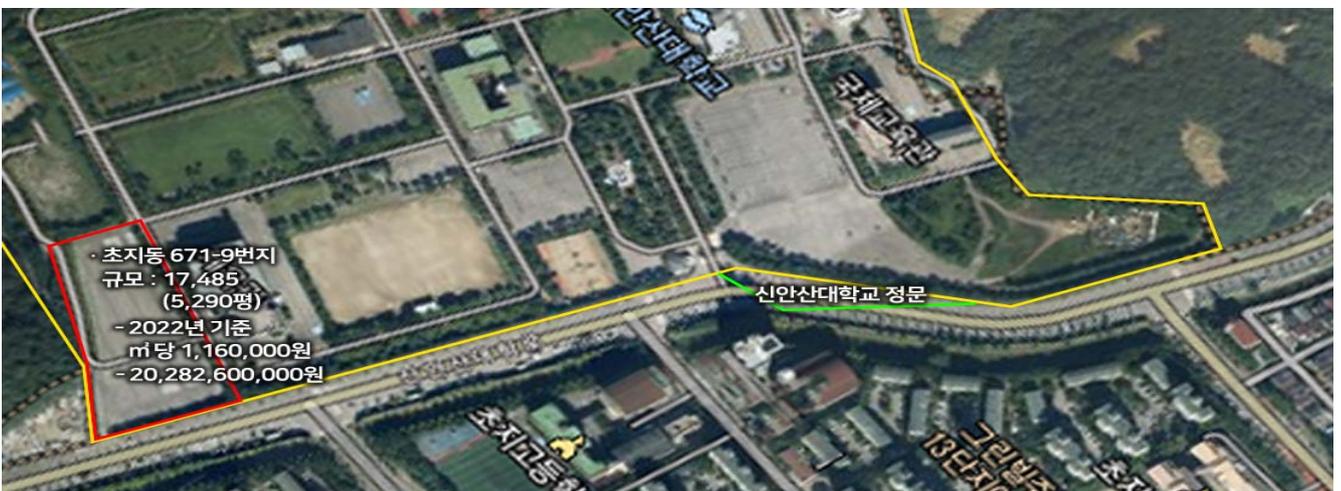
- **오혁수 의장**이 학칙시행세칙 제49조제2항에 대하여 ‘학부모’에서 ‘본인 또는 학부모’로 변경하는 것에 각 평의원의 동의를 구하고, ‘본인 또는 학부모’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혁수 의장**이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학칙 제4조의3제3항에서 ‘해당 규정에 정한다.’를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학칙시행세칙 제49조제2항의 ‘학부모’를 ‘본인 및 학부모’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다른 개정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평의원의 동의하에 의결함.

▣ 제2호 안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최승호 의원**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함.

1. 토지 임대차 계약 변경

- 근거: 「임대관리운영규정」 제5조(임대의 허용범위)
- 임대 장소: 토지임대 초지동 671-9번지(약5,000평) 일부 - 체육관 옆 주차장
- 임대 목적: 유희부지 활용하여 대학 수익창출
- 임대 업종: 관광버스, 화물차 등 임시주차장
- 임차인: 신안산파킹(대표: 이○○)
- 임대 계약방법
 - 임대 기간: 2023. 10. 1.~2024. 9. 30.(1년)
(중전 임대개시일 2023. 3. / 6개월 계약만료에 따라 1년 계약으로 변경)
 - 보증금: 금500만원
 - 임대료: 월550만원 (부가세별도) (중전 월 임대료 500만원)
 - 차량 출입진출: 체육관 쪽 임시주차장 출입구 사용 (정문 사용하지 아니함)
 - 쓰레기, 폐기물 임차인 처리 및 관리인 상주 등
 - 2023년 상반기 임대결과 > 학습권 침해, 교육환경 저해 등 민원 없이 운영되었음.



[그림1] 671-9번지 부지 사진

2. 교내 서점 임대차 계약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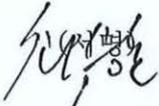
- 근거: 「임대관리운영규정」 제5조(임대의 허용범위)
- 임대 장소: 목양관 1층 104호(64.5㎡)
 - 종전 103호, 104호 임대하였으나 수요급감으로 103호실 철수
- 임대 목적: 서점 및 문구점 유치로 학생편의시설 제공
- 임차인: 교내서점(대표: 정○○)
- 임대 업종: 서점, 문구
- 임대 계약방법
 - 임대 기간: 2023. 9. 1.~2024. 8. 31.(1년)
 - 보증금: 금2,000만원
 - 임대료: 월25만원 (부가세별도) (종전 월 임대료 50만원)
 - 전기료 모자분리하여 별도납부하고 있음.
- **고찬영 의원**이 671-9번지 일부 임대 건에 대해서 새로 임대 계약하는 기간이 10월 1일부터인데 기존 계약이 9월 초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 그 사이 기간에 대해서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최승호 의원**이 계약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있지 않으면 보통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봄. 그렇게 때문에 이전에 계약했던 임대료로 남은 기간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답변함.
- **고찬영 의원**이 현재 우리 대학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임대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입찰공고가 올라가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인근 대학에서는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수의 계약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임대료 활용할 수 있는 유희부지를 사전에 공지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업무가 진행되면 좋겠다고 권유함.
- **오혁수 의장**이 담당 부서에서는 고찬영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있을 임대 계약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봐도 의혹을 품지 않도록 객관화하여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임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요청함.
- **고찬영 의원**이 교내 서점의 경우에는 모자분리를 하여 별도로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체육관 장기 대관의 경우에는 왜 불가능한지 질의함.
- **최승호 의원**이 체육관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또한 별도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이 있어 정확하게 모자분리가 어려운 상황임. 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파악하고 가능한 한 업체가 전기세를 부담하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함.
- **오혁수 의장**이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평의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의결함.

7. 폐회선언 :

이상 안건을 심의 종료하고 11시 55분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의 회의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의장	오혁수			
의원	김세환		이귀영	(서명)
	김동련		최승호	
	김기동		고찬영	
	이상수	(서명)	한송이	(서명)
	강부근	(서명)	김경준	(서명)
	김은혜	(서명)	안현준	